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성가복지회 이사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21년 9월 17일(금) 15:00~16:00

2. 회의장소 : 교구청 5층사목상황실

3. 이사 : 대표이사 오성기

이사 서철승, 성태수, 이명재, 김봉술, 장진석, 박경순, 최동배
감사 유승현, 최종문

4. 참석자 : 대표이사 오성기

이사 서철승, 이명재, 김봉술, 박경순, 최동배

5. 회의안건 : 임원 선임 및 정관변경 건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참석하였으므로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성가복지회 이사회 시작을 선언하다. 참석이사들에게 감사인사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다

1) 제1호 의안 : 임원 선임의 건

대표이사 오성기 : 법인 이사님들의 임기 만료가 도래하고 있어 새롭게 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외부추천이사 두 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에 따라 이번 이사회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법인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임) 및 17조(임원선임의 제한), 18조(임원의 임기)를 살펴보시고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관 제28조에 의거,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잠시 퇴장하겠습니다. 이사회 진행은 서철승 이사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오성기 퇴장)

서철승 이사 : 오성기 대표이사는 2018년부터 3년 동안 이사장으로 활동 해 주셨습니다. 정관 내용을 참조하셔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술 이사 : 오성기 이사님은 대표이사로 천주교성가복지회를 잘 이끌어주셨고, 앞으로도 법인을 이끌어 가기에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임하셔서 법인 발전을 위해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이명재 이사 : 김봉술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경순 이사 : 재정합니다.

서철승 이사 : 이의 없습니까? (전체이사 : 네, 없습니다.)

그럼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체이사 모두 동의하다)

서철승 이사 : 이사님들의 만장일치로 오성기 대표이사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대표이사 오성기 입장)

대표이사 오성기 : 다음은 서철승 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른 이사 선임 건입니다. 서철승 이사께서는 잠시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서철승 이사 퇴장). 의견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명재 이사 : 서철승 이사님은 우리 법인의 실무를 맡아 처리해 주시는 분으로 연임하셔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박경순 이사 : 이명재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봉술 이사 :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오성기 : 다른 이사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전체 이사님들의 의견을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체이사 모두 동의)

대표이사 오성기 : 전체 이사님들의 동의로 서철승 이사님께서 선임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서철승 이사 입장)

대표이사 오성기 : 다음은 성태수 이사님의 임기 만료에 따른 이사 선임 건입니다. 오늘은 참석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나누어 주십시오.

박경순 이사 : 성태수 이사님은 우리 법인에서 꼭 필요한 분으로 이번에도 연임하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명재 이사 : 동의합니다.

최동배 이사 :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오성기 : 이사님들의 의견에 따라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체이사 모두 동의하다)

대표이사 오성기 : 전체 이사님들의 만장일치로 성태수 이사님을 선임 의결하였음을 선언합니다.

대표이사 오성기 : 김봉술 이사님의 임기 만료에 따른 이사 선임건입니다.

(김봉술 이사 퇴장하다) 의견을 나누어 주십시오.

서철승 이사 : 김봉술 이사님은 법인 실무를 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연임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순 이사 :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동배 이사 :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오성기 : 두분 이사님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전체 이사님들의 의견을 가부로 묻겠습니다. (전체이사 모두 동의하다)

대표이사 오성기 : 이사님들께서 모두 동의해주셔서 김봉술 이사님을 선임하였음을 선언합

니다. (김봉술 이사 입장)



대표이사 오성기 : 다음은 박경순 이사님의 임기 만료에 따른 선임건입니다.

(박경순 이사 퇴장하다)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승 이사 : 박경순 이사님은 성가정의 집 시설장으로 시설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법인 이사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임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최동배 이사 : 서철승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봉술 이사 :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오성기 : 그럼 이사님들의 의견을 가부로 묻겠습니다.

(전체이사 모두 동의하다.)

대표이사 오성기 : 전체 이사님들께서 모두 동의하셔서 박경순 이사님을 선임하였음을 선언 합니다. (박경순 이사 입장)

대표이사 오성기 : 오늘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장진석 이사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임 건입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술 이사 : 장진석 이사님도 연임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재 이사 : 네, 동의합니다.

박경순 이사 :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오성기 : 이사님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전체 의견을 가부로 묻겠습니다.

(전체이사 모두 동의하다)

대표이사 오성기 : 이사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 해 주셔서 장진석 이사님을 선임 의결하였음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오성기 : 다음은 외부이사 선임 건입니다.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해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인 외부이사로 활동하고 계신 이명재 관장님과 최동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분 모두 임기만료에 따라 새롭게 선임을 해야 합니다.

이사님들께서는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승 이사 : 저는 이명재 관장님과 최동배 교수님께서 연임하셔서 법인을 위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명재 관장님은 군산지역에서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계시며 가까이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최동배 이사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이자 변호사여서 법적인 문제나 외부지역사회의 현안에 관한 문제들을 자문 해 주셨습니다

박경순 이사 : 서철승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봉술 이사 :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오성기 : 두 분 이사님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대표이사 오성기 : 그럼 이명재 이사님에 관한 사항 먼저 가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이사님 퇴장하다) 이사님들의 전체 의견을 가부로 묻겠습니다.

(전체이사 모두 동의하다)

대표이사 오성기 : 네, 이사님들께서 모두 동의해주셔서 이명재 이사님께서는 본 법인의 외부이사로 선임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명재 이사 입장하다)

대표이사 오성기 : 다음은 최동배 이사님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동배 이사 퇴장하다)

대표이사 오성기 : 이사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가부로 묻겠습니다.

(전체이사 모두 '예'하고 동의하다)

대표이사 오성기 : 전체 이사님들께서 동의해주셔서 최동배 이사님께서는 본 법인의 외부이사로 선임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최동배 이사 입장하다)

대표이사 오성기 : 그리고 서철승 이사님께서는 천주교성가복지회에서 상임이사직을 수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철승 이사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오성기 :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임원선임의 건은 대표이사 오성기, 상임이사 서철승, 이사 성태수, 이사 김봉술, 이사 박경순, 이사 장진석, 외부이사 이명재, 외부이사 최동배로 최종심의 결정되었음을 확인하며, 정관 제18조(임원의임기) ①항에 의거, 이사님들의 임기는 3년임을 알려 드립니다.

2)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대표이사 오성기 : 천주교성가복지회 정관변경 건입니다. 상임이사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표이사 서철승 : 천주교성가복지회 법인 정관 변경(안)입니다. 정관 변경 건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들을 참조하여 몇 가지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3조(사무소의 소재) 법인소재지의 주소는 구체적인 지번을 표시하여 명시(민법 제36조)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4조(사업의 종류)에서 수익사업은 법인 정관 변경사항이므로 이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참조).

셋째, 제18조(임원의 임기 등) ②항 '보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는 항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에 의해(임원의 임기보장 조항 삭제) 본 법인의 정관에서도 이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넷째, 제24조(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의 조문을 2개 추가하고자 합니다. 우리 법인은 처음 법인 설립당시 지원법인이었으나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설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운영규정 변경(안)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제3조(사무소의 소재) 이 법인의 사무소는 천주교 전주교구청내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남노 송동)에 둔다.	주소변경 됨. 민법 제36조 :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함(구체적인 지번까지 명시)
제4조(사업의 종류) ③이 법인은 제①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③이 법인은 제①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 수익사업은 정관변경 사항임.
제18조(임원의 임기 등) ②보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등) ②삭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4항 : 임원의 임기보장 조항 삭제
제24조(의결사항) 1호~8호	제24조(의결사항) : 7호, 8호 삽입하여 1~10호로 변경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 법인은 처음에는 지원법인이었으나, 현재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추가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의결사항을 개정하였음.

이사 이명재 : 법적 근거에 의해 수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사 박경순 : 재청합니다.

대표이사 오성기 : 이명재 이사님과 박경순 이사님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요? (네, 없습니다.)

대표이사 오성기 : 그럼 이사님들의 의견을 가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이사 모두 동의)

대표이사 오성기 : 천주교성가복지회 정관 변경(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대표이사 오성기 : 이번 안건은 이것으로 심의 종료되었음을 선언하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폐회를 선언하고, 기도로 마친다.)

마침시간 : 16시 00분

위 기록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석 임원이 서명·날인함.

대표이사

오성기



이 사

서철승



이 사

이명재



이 사

김봉술



이 사

박경순



이 사

최동배



2021년 9월 17일



사회복지
법 인

천주교성가복지회